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6 선고 2019가합58894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육삼신, 심정훈, 조세형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3. C
4. D

피고 3, 4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혁도
변 론 종 결 2021. 3. 12.
판 결 선 고 2021. 3. 26.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5,944,130원 및 그 중 272,521,240원에 대하여 2019. 6. 21.부터 2020. 6. 11.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2018. 11. 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나. 피고 D와 피고 B 사이에 2019. 1. 15. 체결된 매매예약을 각 취소한다.

3. 원고의 피고 C, 피고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 C은 피고 B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 임의경매절차에 따른 배당금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그 양도통지를 하고, 피고 D은 피고 B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 임의경매절차에 따른 배당금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그 양도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장갑, 가방, 의류, 스포츠용품 등의 제조 및 판매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1) 피고 A은 2015. 2. 5.경 원고와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원고로부터 신용보증한도 270,000,000원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2015. 2. 16. 위 수출신용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수차례 갱신되었고, 최종적으로 피고 A은 2019. 1. 21. 원고로부터 신용보증한도 270,000,000원, 보증기간 2015. 2. 4.부터 2020. 1. 29.까지로 된 수출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받았다.

2) 중소기업은행은 2019. 1. 25.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제출받고, 위 1)항 기재 대출금 300,000,000원의 변제기를 2020. 1. 29.까지로 연장해 주었다.

3)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위 연대보증약정을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다. 피고 A이 2019. 4. 21.경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제 때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과 피고 B이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보증채무 이행으로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행, 행사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을 원고가 정한 방법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고,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연 10%로 정하고 있다.

2)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받고, 2019. 6. 20.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에 따른 대출원리금으로 272,521,240원(= 원금 270,000,000원 + 이자 2,521,24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관한 채권보전을 위해 합계 3,422,890원1)의

의

법적 절차비용을 지출하였다.

마. 1) 피고 C은 2018. 11. 5. 피고 B에게 2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 B은 2018. 11. 6. 피고 C과, 피고 B이 피고 C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25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피고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 C은 2018. 11.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25,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바. 피고 B은 2019. 1. 15. 피고 D과, 피고 B이 피고 D에 대하여 부담하는 100,000,000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D을 가등기권자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1)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9. 10.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2)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은 2020. 6. 25. G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20. 8. 20.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622,815,257원 중 피고 C이 2순위 근저당권자로서 250,000,000원, 피고 D이 담보가등기권자로서 100,000,000원, 원고가 가압류권자로 20,221,226원(배당요구액 270,000,000원)을 각 배당받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3) 이에 대하여 가압류권자 중소기업은행의 양수인 H 유한회사가 피고 C과 피고 D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합408755호로 배당이의의 소가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 피고 A,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 피고 D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피고 B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대위변제금 원리금 272,521,240원과 채권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비용 대지급금 3,422,890원 합계 275,944,130원 및 그 중 위 272,521,240원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9. 6. 2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6. 1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2)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18. 11. 6. 및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2019. 1. 15. 당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금 채권이 아직 구체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위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로부터 약 5 내지 6개월 후, 이 사건 매매예약일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19. 4. 21.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 C, 피고 D 스스로도 주채무자인 피고 A이 2018년 말경 유일한 매출처인 I와의 물품공급계약을 종료하게 되는 등 피고 A의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고,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대보증인인 피고 B 또한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 및 이 사건 매매예약일 당시 피고 B이 가까운 장래에 원고에게 보증사고 발생에 따른 연대보증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실제로 2019. 6. 20.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금 채권이 발생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연대보증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피고 B(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2018. 11. 6.) 및 이 사건 매매예약(2019. 1. 15.) 체결 당시 피고 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있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 및 이 사건 매매예약일에 가까운 2019. 4. 26.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건물의 시가는 620,000,000원이다.

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무렵 피고 B의 소극재산은,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대출금 연대보증채무 743,637,328원, 가계대출채무 18,000,000원 합계 761,637,328원에 달하여 위 적극재산 가액을 초과한다. 따라서 피고 B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은 명백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2020. 1. 29.자 사실조회결과, J에 대한 2020. 10. 21.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피고 C)

가)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참조).

다만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사업의 계속 추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존 채무를 아울러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켰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인 피고 B이 자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특정 채권자인 피고 C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사해행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피고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C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B이 주채무자인 피고 A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신규 자금을 융통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주채무자인 피고 B으로 하여금 자금을 융통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체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C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통해 융통받은 자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있었던 주체는, 피고 C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피고 B이 아니라, 피고 B이 대표자로 재직 중인 피고 A이다.

② 피고 B이 피고 C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으로부터 250,000,000원을 차용한 다음, 피고 A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일인 2018. 11. 7. 200,000,000원, 그 다음날인 2018. 11. 8. 50,000,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자로서, 위 250,000,000원 이외에도 2018. 11. 7. 및 2018. 11. 8.을 전후하여 피고 B과 피고 A 사이에 상당한 규모의 다른 금전 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B이 피고 A에 입금한 위 250,000,000원이 피고 C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피고 A이 2018년 말경 매출처인 I와의 물품공급계약을 종료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나아가 부득이 연대보증인 피고 B의 책임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신규 자금을 융통하지 않으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 A이 피고 B으로부터 입금받은 위 250,000,000원을 사업의 계속적 추진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불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

④ 피고 B과 피고 C은 자매관계이다.

2) 이 사건 매매예약에 관하여(피고 D)

가) 이 사건 건물이 책임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D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그 가액을 초과하는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이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각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건물은 책임재산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피담보채권액이라 함은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발생하여 있는 채권금액이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6224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매매예약일(2019. 1. 15.)에 가까운 2019. 4. 26.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건물의 시가가 62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2019. 1. 15.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242,4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 근저당권자 피고 C,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의 2순위 근저당권(이 사건 근저당권)이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 위 2019. 1. 15.을 기준으로 위 1순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166,160,120원, 위 2순위 근저당권(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25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2019. 1. 15.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의 가액 620,000,000원이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합계액인 416,160,120원(= 166,160,120원 + 25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건물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따라서, 피고 B이 피고 D에 대하여 부담하는 100,000,000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인 피고 B이 책임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물을 특정 채권자인 피고 D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예약에 관하여 피고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D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라.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하여

따라서 피고 B와 피고 C,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주문 제2항 기재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은 각 취소되어야 한다.

마. 원상회복청구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인바,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면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하여야 한다.

한편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이 경우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적법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5호), 이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152조 제3항). 위와 같이 배당액이 공탁된 뒤 배당이의의 소에서 이의된
채권에 관한 전부 또는 일부 승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의된 부분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된다. 따라서
수익자에 대한 배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계속 중인 경우에는 배당표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에 대하여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4134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B의 가압류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양수인 H
유한회사가 피고 C와 피고 D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현재 배당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구하는
방식으로 원상회복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볼 것이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피고 B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우정, 판사 백상빈, 판사 인형준

별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성남시 분당구 동

[도로명주소]성남시 분당구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스라브지붕 20층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성남시 분당구 대 37145.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6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59.98㎡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37145.6분의 51.21. 끝.

1) = {(1,070,960원 + 1,183,670원 + 1,239,380원) - 71,119원(송달료 환급), 10원 미만 버림}